

토지정보분야 서비스 이행기준

1. 제증명 발급의 신속처리

- ◆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신청 사항은 접수순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.
- ◆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은 즉시 처리하겠으며, 지적측량 민원접수 또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
2. 개별공시지가 업무 공정처리

- ◆ 개별공시지가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◆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토지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확인을 거쳐 결정하겠습니다.
- ◆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은 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토지 이용 상황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.

3. 부동산 거래신고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

- ◆ 2006년 1월1일부터 “부동산실거래신고의무제도”가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고객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으며 부동산거래 신고서 접수 시 신고필증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.
- ◆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수시로 실시하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.

4. 공정한 지적관리

- ◆ 측량 기준점의 주기적 관리로 정확한 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일관성 있는 측량 결과를 제공, 측량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겠습니다.
- ◆ 지적민원 및 기업지원 콜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여 구민이 원하실 경우 직접 방문하여 도움 주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- ◆ 경계나 위치정정으로 새로운 경계 확인 측량요구가 있는 때에는 현지 출장 하여 확인 측량을 실시해 드리겠습니다.

5. 토지대장의 관리

- ◆ 토지의 재원과 권리관계를 등록한 대장은 소유권이나 표시사항 변경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소로부터 등기사항이 통보된 후 2일 이내에 대장정리를 하여 항상 최신정보가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.
- ◆ 토지의 분할이나 그 외 이동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촉탁 등기를 하여 구민의 부담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
6. 최적의 생활주소 서비스 제공

- ◆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편리한 생활주소 제공하겠습니다.
- ◆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- ◆ 건물 신축, 증축, 개축 등으로 생기는 건물번호의 변동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
- ◆ 도로명주소, 국가기초구역, 국가지점번호를 바르게 관리하여 어느 곳이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7.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

서비스명	담당	전화번호	팩스 (FAX)
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. 산정 및 이의신청	부동산정보담당	220-4752~7	220-4759
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	지적민원담당	220-4781, 220-4783, 220-4785, 220-4787	
토지이동지 정리 지적불부합지 정리 조상땅찾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	지적담당	220-4771~6	
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	새주소담당	220-4761~4	

8.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

- ◆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 신분증과 정보주체의 제적등본·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(대리인일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위임장 지참)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사무소에서 과도한 중개보수를 요구할 경우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토지정보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 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 하겠습니다.
- ◆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은 법정 기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